

무배당 하나 어린이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하나 어린이보험을 개정함에 있어서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16년 3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하나 어린이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칭	종류
무배당 하나(①) 어린이보험(②)	어린이형
	태아형

※ 등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또는 ②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어린이형	태아형	
3년, 5년	일시납	0세 ~ 15세(태아 제외)	태아	일시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가.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무배당 주산기질환입원특약을 의무부가하여 판매한다. 다만,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의무부가사유: 태아가입시 태아기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부가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온라인채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리점을 제외한다.

14.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상품 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다. 가입대상

이 보험계약은 태아형에 한하여 태아를 가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에서 정한 태아가입특칙에 따라 운용한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